

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변경 신청서

학 과		학 번		학 년		반	
성 명		연락처	☎ 본 인				
생년월일			☎ 보호자				

이 직 사유	☐ 개인	퇴직 산업체명		퇴직일	
	☐ 구조조정	신규 산업체명		취업일	
	☐ 폐업(휴업)	대표자		사업자번호	
	☐ 복학	연락처1		연락처2	
	☐ 재입학	주소			

제 출 서 류	공적증빙 서류 목록		발급기관	홈페이지	ARS
	공통서류	·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변경 신청서 1부 ·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2부	학생지원팀	대학 홈페이지 정보광장 → 공지사항	032-870-2644
	산업체 재직자	·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부 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	국민건강보험공단	www.nhic.or.kr	1577-1000
			국민연금공단	www.nps.or.kr	1355
			고용보험	www.ei.go.kr	1350
			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	total.kcommel.or.kr	1588-0075
개 인 사업자	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해당 산업체	-	-	
	·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	국세청	www.hometax.go.kr		
	· 2021년 납세사실증명원 1부 ·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				

※ 개인사업자 증빙서류는 위탁생 본인이 개인 사업자이며, 직장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제출

제 적 기 준	① 매학기 시작 전월 위탁 교육생의 재직 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. ② 4대 보험 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. ③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한 자가 입학 후 협약 산업체에서 6개월 의무재직을 하지 않은 경우 ④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○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○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* 위의 3개월,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
---------	--

유 의 사 항	※ 대학과 산업체와의 실거리가 70km를 초과할 경우 위탁교육 협약 체결 불가 ※ 산업체 퇴직(이직)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위탁생 본인에게 있음.
---------	---

상기 산업체위탁생 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산업체위탁계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

(서명 또는 인)

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귀하